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77

제출일자: 2017. 8. 23.
제 출 자: 광진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사용 처리가 가능함에 따라 주민투표 조례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명확한 근거 없이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안 제8조 내지 제10조)

○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이해충돌가능성 배제를 위해 심의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 마련 (안 제12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안 제3조 내지 제7조, 제9조 내지 제16조)

○ 별표 서식 미비사항 정비 (별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4.참고사항(관련규정 등)

가. 관계법령 : 「주민투표법」,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⑴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⑵ 규제심사 : 해당없음

⑶ 부패영향평가 결과 반영(연임할 수 있다 →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⑷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민투표법(이하 “법” 이라한다)” 를 “「주민투표법」” 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를 “「주민투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로 한다.

제3조 중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를 “관계법령에 따라” 로 하고,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 을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은 ” 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로 하고, 제4호 중 “기타 다른 법률에” 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로, 제5호 중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을 “그 밖에 주민의 복리·안전” 으로 한다.

제5조 중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로 한다.

제6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법 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로 하고,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2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법 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으로 하고, “법 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거소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제2항 중 “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을 “구청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으로 하고,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제4항 중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 ”로 한다.

제11조 중 “법 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를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4호를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를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광진구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을 “광진 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 주민투표”를 “그 밖에 주민투표”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을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로 한다.

제1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 ”으로 하고,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6조 중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를 ” 2. 생년월일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기재 “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를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라”로 하며,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를 ” 2. 생년월일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기재 “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주민투표에관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주민투표에관한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로 하며, “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를 ” 3. 생년월일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기재 “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주민투표에관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주민투표에관한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로 하며, “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를 ” 3. 생년월일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기재 “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중 “주민투표법 제16조”를 “「주민투표법」 제16조”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를 ” 3. 생년월일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기재 “로 하며, “4.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를 “4.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 상세주소를 기재.”라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로 하며,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를 ”2. 생년월일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기재“로 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로 하며,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를 ”2. 생년월일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기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table>
<tr><td colspan="5">청 구 인 대 표 자 증 명 서 교 부 신 청 서</td></tr>
<tr><td rowspan="2">청구인
대표자</td><td>성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3">(전화번호 :)</td></tr>
<tr><td>청구의대상 및
취지</td><td colspan="4"></td></tr>
<tr><td>청구이유</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5">「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td></tr>
<tr><td colspan="5">※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td></tr>
</table>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 서식)

청 구 인 대 표 자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광 진 구 청 장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3호 서식)

서 명 요 청 권 위 임 신 고 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 임 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주민투표에관한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생년월일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기재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서 명 요 청 권 위 임 신 고 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주민투표에관한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광진구청장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생년월일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기재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 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서울특별시광진구○○동(○책중 ○권)

※ 「주민투표법」 제16조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작성요령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 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생년월일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기재
4.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 상세주소를 기재.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6.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별지 제6호 서식)

주 민 투 표 청 구 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 : 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7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 : 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60g/㎡)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한다)에서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
제2조(구의 책무) ①~③ (생 략) ④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	제2조(구의 책무) ①~③ (현행과 같음) ④구청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 ~ 3. (생 략) 4.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5.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현 행	개 정 안
정사항	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 .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 .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	③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

현 행	개 정 안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	지----------.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등을 ----------.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등을 ----------.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로 열람기간 ----------.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 ----------.
②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②구청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	③제1항에 따른 열람시에는 관계 ----------.
④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	④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라 열람기간 ----------.
제11조(서명보정기간)법 제12조제7	제11조(서명보정기간)법 제12조제7

현 행	개 정 안
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 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③ 생략	②, 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광진구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	2. 광진구 의회가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⑥ ~ ⑩ (생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13조(처리기간) ① (생 략)	제13조(처리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동조제5항의	②---------- 같은 조

현 행	개 정 안
규정에 의한 ----------.	제5항에 따른----------.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보정을 하게 ----------.
③----------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	③---------- 범위내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	②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서식에 의한다.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 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 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 서식에 따른다.
③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 서식에 의한다.	③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 ---------- 서식에 따른다.
④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 서식에 의한다.	④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 서식에 따른다.
⑤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 서식에 의한다.	⑤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 서식에 따른다.
⑥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	⑥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

현 행	개 정 안
의신청서는 ---------- 서식에 의한다.	는 ---------- 서식에 따른다.
제16조(공표방법 등) ----------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제16조(공표방법 등) ----------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 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